

○ 용어 정리

<p>도심항공교통 (Urban Air Mobility)</p>	<p>도심 내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(eVTOL)와 버티포트를 이용하여 도심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</p>
<p>지역 간 항공교통 (Regional Air Mobility)</p>	<p>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(eVTOL)와 버티포트를 이용하여 지역 간 사물이나 화물을 이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항공교통체계</p>
<p>도심형항공기</p>	<p>「항공안전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또는 이에 준하는 기기 중 도심에서도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(이하 ‘국가교통위원회’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고시</p>
<p>버티포트</p>	<p>도심형항공기의 이륙·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한 시설</p>
<p>도심항공교통회랑</p>	<p>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형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의 상공에 표시한 공간의 길</p>

※ 출처: 「도심항공교통법(2024. 4. 25. 시행)」 발췌

○ 도심항공교통 사업 구분

구분	주요내용
도심항공교통사업	
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	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 - 정기편 운항: 버티포트와 버티포트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도심형항공기 운항 - 부정기편 운항: 정기편 운항 외의 도심형항공기 운항
도심항공교통관리사업	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, 교통흐름 관리, 비행계획 승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이탈 감시 등 교통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
도심형항공기사용사업	도심항공교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도심형항공기를 사용하여 수색·구조, 의료·응급후송 등을 하거나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버티포트운영·관리사업	「도심항공교통법」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버티포트를 운영·관리하는 사업
버티포트개발사업	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한 이륙·착륙 및 항행,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및 도심항공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·업무·문화·관광시설 등의 구축을 위하여 버티포트를 개발·건설하는 사업

※ 출처: 「도심항공교통법(2024. 4. 25. 시행)」 발췌